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# 시 보

www.namwon.go.kr

<b>선 람</b>	기관장

제 76 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 8. 5(수)

## 고 시

- 남원시 고시 제2015- 48호 지적제조사사업 대행 고시 ..... 1

## 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 2015 - 960호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..... 2
- 남원시 공고 제 2015 - 960호 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..... 7
- 남원시 공고 제 2015 - 960호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..... 12

<b>회 람</b>		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고시 제2015- 48호

##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4조의  
규정에 의거 2015년 남원시 내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등  
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08. 05.

남 원 시 장

1.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: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
2. 사업지구의 명칭 : 내척지구
3. 사업위치 및 면적
  - 남원시 내척동 198-33번지 일원 795필지 564천㎡
4. 대행 업무 :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
  - 일필지조사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」
  - 지적재조사측량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」

남원시 공고 제 2015 - 960호

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5일

남 원 시 장



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1. 제정이유

개정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총무과장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 
다. 의견제출할 곳 :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(우편번호 590-701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620-6704), 직접방문, 인터넷 등

4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 담당자 황인욱(전화 620-606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8. 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총 무 과 장

### 1. 제안이유

2016년 예산편성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, 대한적십자사와는 별개조직으로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대한적십자사 조직”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로 정의하여 지원대상을 분명히 함(안 제2조)
- 나.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여 지원범위를 분명히 함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절차 및 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4조 및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- 1) 입법예고
- 기 간: 2015. 8. 5. ~ 2015. 8. 25. (20일간)
  - 결 과:
- 다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- 라.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전라북도 남원시 조례 제 호

**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적십자사봉사회(이하 “봉사회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.
2. “봉사회 회원”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봉사회 사업”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**제3조(활동지원)**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난구호 활동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 사업
3. 보건의료 활동 사업
4. 안전교육 활동 사업
5. 평생교육 활동 사업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

**제4조(표창)** 시장은 봉사회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「남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5조(보조금 지급 등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

2. 제출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남원시 공고 제 2015 - 960호

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5일

남 원 시 장



## 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## 1. 제정이유

개정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

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 까지 불임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총무과장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 
다. 의견제출할 곳 :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(우편번호 590-701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620-6704), 직접방문, 인터넷 등

## 4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 담당자 황인욱(전화 620-606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8. 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총 무 과 장

### 1. 제안이유

재향경우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경우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지원대상 및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향경우 및 그 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재향경우회”의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지원대상을 분명히 함(안 제2조)
- 나. 재향경우회의 지원대상사업을 열거함으로써 보조사업지원범위를 분명히 함(안 제3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기 간: 2015. 8. 5. ~ 2015. 8. 25.(20일간)
    - 결 과:
- 다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- 라.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전라북도 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재향경우회”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“남원시재향경우회”(이하 “재향경우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사업)** 남원시장은 재향경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를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
- 2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
- 3.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

**제4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**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**

**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**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**제3조(작성대상)**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**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

2. 제출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남원시 공고 제 2015 - 960호

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5일

남 원 시 장



##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## 1. 제정이유

개정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

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총무과장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 
다. 의견제출할 곳 :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(우편번호 590-701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620-6704), 직접방문, 인터넷 등

## 4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 담당자 황인욱(전화 620-606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8. .  
 제출자 : 남원시장  
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

## 1. 제안이유

남원시민의 애향의식 고취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소통, 지역 숙원문제,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애향사업 및 범시민운동의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하여 남원시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의 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함(안 제3조)
- 나.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계획제출의 시간적 예외규정을 두어 지원 대상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 함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기 간: 2015. 8. 5. ~ 2015. 8. 25. (20일간)
    - 결 과:
- 다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- 라.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의식 고취, 시민소통 추진, 숙원사업 추진,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시민애향운동”이란 남원출신 또는 남원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나 청소년 학업 증진 또는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.
2. “범시민운동”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
  - 가. “시민소통활동”이란 시민, 지역, 직능 단체 간의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  - 나. “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”이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전체의 숙원사업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
  - 다. “시민이해상충해소활동”이란 시민 간 또는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
  - 라.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업

**제3조(지원대상 및 범위)** ① 시장은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을 수행하는 법인, 또는 법정단체 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
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
2.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 할 것
3.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구성·운영되지 아니 할 것
4. 상시 구성원수가 21명 이상일 것

③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계획의 제출 등)**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, 사업의 목적과 내용, 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**제5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#### 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

2. 제출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